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1인가구 및 맞벌이 가구 증가로 발송인이 반환 거절 의사를 표시하여 발송한 등기우편물을 수취인에게 직접 배달할 수 없어 우체국에서 보관하다가 폐기하고 있는 등기우편물이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, 등기우편물의 방법으로 발송한 우편물을 수취인에게 직접 배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송인의 요청에 따라 해당 우편물을 수취인의 우편수취함에 투입하여 배달할 수 있는 우편역무를 신설하고, 내용증명 우편물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접수하거나 우체국창구에서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내용문서를 증명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미 전자적으로 증명처리가 완료된 내용문서를 종이문서로 보관할 필요성이 적다는 점을 고려하여, 해당 내용문서의 원본을 전자문서로 보관할 수 있도록 내용증명 우편물의 접수 및 처리 제도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 전

우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우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5조제1항에 제1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의3. 선택등기취급: 등기취급 및 우편물의 반환거절을 전제로 우편물을 배달하되, 그 우편물을 수취인에게 배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준등기취급에 따라 우편물을 배달하는 특수취급제도

제2장제2절제2관의3(제28조의5부터 제28조의7까지)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관의3 선택등기취급

제28조의5(선택등기취급) 제25조제1항제1호의3의 선택등기취급(이하 “선택등기”라 한다)을 하는 우편물(이하 “선택등기우편물”이라 한다)에는 발송인이 그 표면의 왼쪽 중간에 “반환 불필요” 및 “선택등기”의 표시를 해야 한다.

제28조의6(선택등기우편물의 접수) 선택등기우편물을 접수한 때에는 발송인에게 접수번호를 기록한 우편물수령증을 교부해야 한다.

제28조의7(선택등기우편물의 배달) 선택등기우편물은 영 제42조제3항

및 이 규칙 제28조에 따라 배달한다. 다만, 선택등기우편물을 수취인에게 배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8조의4에 따라 배달한다.

제4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48조(내용문서 원본 또는 등본의 제출 등) ① 내용증명우편물을 발송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내용문서 원본 또는 등본을 제출해야 한다.

1. 우체국창구를 통하여 발송하려는 경우(우체국창구에서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내용문서를 증명처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): 내용문서 원본 1통과 그 등본 2통(발송인이 등본을 되돌려받지 않으려는 경우에는 1통)
2. 우체국창구를 통하여 발송하려는 경우로서 우체국창구에서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내용문서를 증명처리하는 경우: 내용문서 원본 1통과 그 등본 1통(발송인이 등본을 되돌려받지 않으려는 경우에는 등본을 제출하지 않는다)
3.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송하려는 경우: 내용문서 원본 1통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7조에 따른 동문내용증명 우편물을 발송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내용문서를 제출해야 한다.

1. 우체국창구를 통하여 발송하려는 경우(우체국창구에서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내용문서를 증명처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): 수취인 별로 각 수취인의 성명 및 주소를 적은 내용문서 원본 각 1통과 수취인 전부의 성명 및 주소를 적은 내용문서 등본 2통(발송인이 등본을

되돌려받지 않으려는 경우에는 1통)

2. 우체국창구를 통하여 발송하려는 경우로서 우체국창구에서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내용문서를 증명처리하는 경우: 수취인별로 각 수취인의 성명 및 주소를 적은 내용문서 원본 각 1통과 수취인 전부의 성명 및 주소를 적은 내용문서 등본 1통(발송인이 등본을 되돌려받지 않으려는 경우에는 등본을 제출하지 않는다)
3.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송하려는 경우: 수취인별로 각 수취인의 성명 및 주소를 적은 내용문서 원본 각 1통

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한다.

1. 우체국창구를 통하여 원본 및 등본을 제출받은 경우(우체국창구에서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내용문서를 증명처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): 원본 및 등본을 각각 증명처리한 후, 원본은 수취인에게 발송하고 등본 중 1통은 발송한 다음날부터 3년간 보관하며 나머지 1통은 발송인에게 되돌려준다.
2. 우체국창구를 통하여 원본 및 등본을 제출받은 경우로서 우체국창구에서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내용문서를 증명처리하는 경우: 원본 및 등본을 각각 증명처리한 후, 원본은 수취인에게 발송하고 등본은 발송인에게 되돌려주며 제출받은 원본을 이용하여 1통의 등본을 전자적으로 증명처리된 전자문서로 생산하여 발송한 다음날부터 3년간 보관한다.

3.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원본을 제출받은 경우: 전자적으로 증명처리된 원본을 이용하여 2통을 출력한 후 한 통은 수취인에게 발송하고 나머지 1통은 발송인에게 되돌려주며 그 원본은 발송한 다음날부터 3년간 보관한다.

제52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5항(종전의 제4항) 중 “제3항”을 “제4항”으로, “원본”을 “원본(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접수한 원본은 제외한다)”으로, “봉합하여야”를 “봉합해야”로 한다.

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본확인 날인 등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는 전자적 증명처리 방법으로 계인과 간인을 갈음할 수 있다.

1. 우체국창구를 통하여 원본 및 등본을 제출받은 경우로서 우체국창구에서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내용문서를 증명처리한 경우
2.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원본을 접수받은 경우

제5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③ 제1항에 따른 재증명의 청구에 관하여는 제49조·제50조·제52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53조를 준용한다.

제55조 중 “발송우체국에 특수우편물수령증·주민등록증등”을 “우체국에 특수우편물수령증·주민등록증 등”으로, “동”을 “같은”으로 한다.

제135조의2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고,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선택등기통상우편물 : 10만원

제14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항(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)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”을 “제141조에 따른 서신송달업 신고 및 변경신고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”로, “하여야”를 “해야”로 하며,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43조에 따른 사업개선명령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(매 5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)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.

별표 1부터 별표 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1]

보편적 우편역무의 특수취급 종류와 이에 따른 우편물(제12조의2제2항 관련)

우 편 물 특수취급 종류	통 상 우 편 물	소 포 우 편 물
등 기 취 급	○	○
준 등 기 취 급	○	
선 택 등 기 취 급	○	
보 험 통 상	○	
보 험 소 포		○
내 용 증 명	○	
배 달 증 명	○	○
국 내 특 급 우 편	○	○
특 별 송 달	○	
민 원 우 편	○	
우 편 물 방 문 접 수	○	○
착 불 배 달	○	○
계 약 등 기	○	
회 신 우 편	○	
본 인 지 정 배 달	○	
우 편 주 소 정 보 제 공	○	
우 편 물 의 반 환 정 보 제 공	○	
선 거 우 편	○	

[별표 2]

보편적 우편역무에 부가할 수 있는 우편역무(제12조의2제3항 관련)

구 분	등기	준등기	선택 등기	배달 증명	국내 특급 우편	착불 배달	회신 우편	본인 지정 배달	우편 주소 정보 제공
등 기 취 급			○	○	○				○
보 험 통 상	○			○	○				
보 험 소 포	○			○	○				
내 용 증 명	○			○	○				
배 달 증 명	○		○		○				
국 내 특 급 우 편	○		○	○					
특 별 송 달	○				○				
민 원 우 편	○				○				
우 편 물 방 문 접 수	○			○	○				
착 불 배 달	○								
계 약 등 기	○		○	○	○	○	○	○	○
선 거 우 편	○	○							

비고: 선택등기역무를 부가한 배달증명 우편역무는 등기우편물의 배달방법으로 배달이 완료된 경우에 한정하여 배달 단계의 취급과정을 기록하고 배달을 증명한다.

[별표 3]

선택적 우편역무 종류에 따른 우편물(제25조제2항 관련)

종 류 \ 우 편 물	통 상 우 편 물	소 포 우 편 물
등 기 취 급	○	○
준 등 기 취 급	○	
선 택 등 기 취 급	○	
보 험 통 상	○	
보 험 소 포		○
내 용 증 명	○	
배 달 증 명	○	○
국 내 특 급 우 편	○	○
특 별 송 달	○	
민 원 우 편	○	
모 사 전 송 우 편	○	
우 편 주 문 판 매		○
광 고 우 편	○	
전 자 우 편	○	
우 편 물 방 문 접 수	○	○
착 불 배 달	○	○
계 약 등 기	○	
회 신 우 편	○	
본 인 지 정 배 달	○	
우 편 주 소 정 보 제 공	○	
우 편 물 의 반 환 정 보 제 공	○	
선 거 우 편	○	

[별표 4]

선택적 우편역무에 부가할 수 있는 우편역무(제25조제3항 관련)

구 분	등기	준등기	선택 등기	내용 증명	배달 증명	국내 특급 우편	착불 배달	회신 우편	본인 지정 배달	우편 주소 정보 제공
등 기 취 급			○	○	○	○				○
보 험 통 상	○				○	○				
보 험 소 포	○				○	○				
내 용 증 명	○				○	○				
배 달 증 명	○		○			○				
국내특급우편	○		○		○					
특 별 송 달	○					○				
민 원 우 편	○					○				
우편주문판매	○				○	○				
전 자 우 편	○	○	○	○	○	○				
우편물방문접수	○				○	○				
착 불 배 달	○									
계 약 등 기	○		○		○	○	○	○	○	○
선 거 우 편	○	○								

비고: 선택등기역무를 부가한 배달증명 우편역무는 등기우편물의 배달방법으로 배달이 완료된 경우에 한정하여 배달 단계의 취급과정을 기록하고 배달을 증명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5조(선택적 우편역무의 종류 및 이용조건 등) ①법 제15조제 3항에 따른 선택적 우편역무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 한다. 1. 1의2. (생 략) <u><신 설></u>	제25조(선택적 우편역무의 종류 및 이용조건 등) ①----- ----- ----- ----. 1. 1의2. (현행과 같음) 1의3. <u>선택등기취급: 등기취급 및 우편물의 반환거절을 전제 로 우편물을 배달하되, 그 우 편물을 수취인에게 배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준등기취급에 따라 우편물을 배달하는 특수 취급제도</u> 2. ~ 22. (현행과 같음) ② · ③ (현행과 같음) <u>제2관의3 선택등기취급</u>
2. ~ 22. (생 략) ② · ③ (생 략) <u><신 설></u> <u><신 설></u>	<u>제28조의5(선택등기취급) 제25조 제1항제1호의3의 선택등기취급 (이하 “선택등기”라 한다)을 하 는 우편물(이하 “선택등기우편 물”이라 한다)에는 발송인이 그 표면의 왼쪽 중간에 “반환 불필</u>

<신 설>

<신 설>

제48조(내용문서 원본 및 등본의 제출등) ①내용증명우편물을 발송하고자 하는 자는 내용문서 원본 및 그 등본 2통을 제출하여야 한다.

②동문내용증명 우편물인 경우에는 각 수취인별·내용문서 원본과 수취인 전부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한 등본 2통을 제출하여야 한다.

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 받은 등본 중 한통은 우체국에

요” 및 “선택등기”의 표시를 해야 한다.

제28조의6(선택등기우편물의 접수) 선택등기우편물을 접수한 때에는 발송인에게 접수번호를 기록한 우편물수령증을 교부해야 한다.

제28조의7(선택등기우편물의 배달) 선택등기우편물은 영 제42조제3항 및 이 규칙 제28조에 따라 배달한다. 다만, 선택등기우편물을 수취인에게 배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8조의4에 따라 배달한다.

제48조(내용문서 원본 또는 등본의 제출 등) ① 내용증명우편물을 발송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내용문서 원본 또는 등본을 제출해야 한다.

1. 우체국창구를 통하여 발송하려는 경우(우체국창구에서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내용문서를 증명처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): 내용문서 원본 1통과 그 등본 2통(발송인이 등본을 되돌려받지 않으려는 경우

서 발송한 다음날부터 3년간 보관하고 나머지 한통은 발송인에게 이를 되돌려 준다. 다만, 발송인이 등본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본은 한통을 제출할 수 있다.

에는 1통)

2. 우체국창구를 통하여 발송하려는 경우로서 우체국창구에서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내용문서를 증명처리하는 경우: 내용문서 원본 1통과 그 등본 1통(발송인이 등본을 되돌려받지 않으려는 경우에는 등본을 제출하지 않는다)

3.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송하려는 경우: 내용문서 원본 1통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7조에 따른 동문내용증명 우편물을 발송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내용문서를 제출해야 한다.

1. 우체국창구를 통하여 발송하려는 경우(우체국창구에서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내용문서를 증명처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): 수취인별로 각 수취인의 성명 및 주소를 적은 내용문서 원본 각 1통과 수취인 전부의 성명 및 주소를 적은 내용문서 등본 2통(발송인이 등본을 되돌려받지 않으려

는 경우에는 1통)

2. 우체국창구를 통하여 발송하
려는 경우로서 우체국창구에
서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
내용문서를 증명처리하는 경
우: 수취인별로 각 수취인의
성명 및 주소를 적은 내용문
서 원본 각 1통과 수취인 전부
의 성명 및 주소를 적은 내용
문서 등본 1통(발송인이 등본
을 되돌려받지 않으려는 경우
에는 등본을 제출하지 않는
다)

3.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송하
려는 경우: 수취인별로 각 수
취인의 성명 및 주소를 적은
내용문서 원본 각 1통

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
받은 서류는 다음 각 호의 구분
에 따라 처리한다.

1. 우체국창구를 통하여 원본
및 등본을 제출받은 경우(우
체국창구에서 정보처리시스템
을 통하여 내용문서를 증명처
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): 원
본 및 등본을 각각 증명처리

한 후, 원본은 수취인에게 발송하고 등본 중 1통은 발송한 다음날부터 3년간 보관하며 나머지 1통은 발송인에게 되돌려준다.

2. 우체국창구를 통하여 원본 및 등본을 제출받은 경우로서 우체국창구에서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내용문서를 증명처리하는 경우: 원본 및 등본을 각각 증명처리한 후, 원본은 수취인에게 발송하고 등본은 발송인에게 되돌려주며 제출받은 원본을 이용하여 1통의 등본을 전자적으로 증명처리된 전자문서로 생산하여 발송한 다음날부터 3년간 보관한다.

3.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원본을 제출받은 경우: 전자적으로 증명처리된 원본을 이용하여 2통을 출력한 후 한 통은 수취인에게 발송하고 나머지 1통은 발송인에게 되돌려주며 그 원본은 발송한 다음날부터 3년간 보관한다.

제52조(내용문서의 증명) ① ~

③ (생략)

<신설>
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증명한 내용문서의 원본은 우체국의 취급직원이 보는 곳에서 발송인이 수취인 및 발송인의 성명·주소를 기재한 봉투에 넣고 봉합하여야 한다.

제54조(발송후의 내용증명 청구)

①·② (생략)

③ 제49조·제50조·제52조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53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증

제52조(내용문서의 증명) ① ~

③ (현행과 같음)

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본확인 날인 등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는 전자적 증명처리 방법으로 계인과 간인을 갈음할 수 있다.

1. 우체국창구를 통하여 원본 및 등본을 제출받은 경우로서 우체국창구에서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내용문서를 증명처리한 경우

2.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원본을 접수받은 경우

⑤ ----- 제4항-----
----- 원본(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접수한 원본은 제외한다)-----
----- 봉합해야 -----.

제54조(발송후의 내용증명 청구)

①·② (현행과 같음)

③ 제1항에 따른 재증명의 청구에 관하여는 제49조·제50조·제5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

명의 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.

제55조(등본의 열람청구) 내용증명우편물의 발송인 또는 수취인은 우편물을 발송한 다음 날부터 3년까지는 발송우체국에 특수우편물수령증·주민등록증등의 관계자료를 내보여 동 우편물의 발송인 또는 수취인임을 입증하고 내용문서 등본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.

제135조의2(우편물의 손해배상금액 및 지연배달의 기준) ① 법제3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된 우편물의 손해배상금액은 다음과 같다.

1.·2. (생략)

<신설>

3. ~ 5. (생략)

② ~ ④ (생략)

제145조(규제의 재검토)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(매 3

제53조를 준용한다.

제55조(등본의 열람청구) -----

----- 우체국에 특수우편물수령증·주민등록증 등 -----
----- 같은 -----

-----.

제135조의2(우편물의 손해배상금액 및 지연배달의 기준) ① ---

-----.

1.·2. (현행과 같음)

3. 선택등기통상우편물 : 10만원

4. ~ 6. (현행 제3호부터 제5호까지와 같음)

② ~ ④ (현행과 같음)

제145조(규제의 재검토) ① ----
----- 제141조에 따른 서신송달업 신고 및 변경신고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--

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)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 1. 제141조에 따른 서신송달업 신고 및 변경신고: 2014년 1월 1일 2. 제142조에 따른 휴업·폐업 및 재개업의 신고: 2014년 1월 1일 3. 제143조에 따른 사업개선명령: 2015년 1월 1일 4. 제144조 및 별표 6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: 2015년 1월 1일 <신 설>	----- ----- ----- <u>해야</u> ----. <삭 제> <삭 제> <삭 제> <삭 제> ② <u>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43조에 따른 사업개선명령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(매 5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)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.</u>
---	--